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85 발의연월일: 2024. 12. 6.

발 의 자:서영교・민병덕・한민수

차지호 · 황정아 · 박홍근

강득구 · 복기왕 · 이해식

권칠승 · 정성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,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. 또 한,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,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 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 가능하게 했음.

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,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, 계엄을 선포할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,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,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7조의 2 신설 등).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"거쳐야"를 "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"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의 예외) 제7조의 사항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미치지 않는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입법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군이나 경찰 등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을 위해 국회를 출입할 수 없고, 국회의원이나 국회직원, 일반 국민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.

제11조제1항 중 "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"를 "국회가"로, "요구한 경우에는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"를 "의결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"를 "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"로, "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"를 "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"로 한다.

제13조 중 "현행범인인"을 "형법상 제6장 푹발물에 관한 죄,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4조, 제125조, 제13장 방화와 실화의죄, 제24장 살인의 죄,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,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,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제324조의2, 제324조의3, 제324조의4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,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7조, 제368조, 제369조의 현행범인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	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	⑤		
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			
회의의 심의를 <u>거쳐야</u> 한다.	<u>거쳐 국회의 승인</u>		
	<u>을 받아야</u>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 ① 대통	<u><삭 제></u>		
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			
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(通			
<u>告</u>)하여야 한다.			
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			
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			
없이 국회에 집회(集會)를 요구			
<u>하여야 한다.</u>			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		
	의 예외) 제7조의 사항은 국회		
	및 국회의원에게 미치지 않는		
	<u>다.</u>		
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)	제8조(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)		
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(정보	①		
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			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사			
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			

관의 지휘・감독을 받아야 한 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- 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대통령은 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국회가--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.
 -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 제13조(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) -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.

단, 입법기관은 그러하지 아니 하며, 군이나 경찰 등은 계엄사 령관의 관장사항을 위해 국회를 출입할 수 없고, 국회의원이나 국회직원, 일반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-------의결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.

- ②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 상상태로 회복되면 지체 없이------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o}----.
 - ③ (현행과 같음)

-----형법 상 제6장 푹발물에 관한 죄.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4조, 제125조, 제13장 방

화와 실화의 죄, 제24장 살인의 죄,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, 제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,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 24조의2, 제324조의3, 제324조의 4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,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7조, 제368조, 제369조의 현행범인인--